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| 보도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 | 7.20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 |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부서 | 자산운용과 · 중소기업금융과 · 투자금융팀 | | |
| 책임자 | 안창국 과장(2156-9900) | 담당자 | 송병관 사무관(2156-9898) |
| | 윤영은 과장(2156-9850) | | 고상범 사무관(2156-9861) |
| | 권유이 팀장(2156-9790) | | 김영대 사무관(2156-9798) |
| 배포일 | 2015. 7. 17(금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 |

**제 목 : 시장 자생적인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
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**

- ① 민간투자자만의 벤처조합 결성 허용, 벤처투자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활성화
- ② 중소·벤처기업 투자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 및 금투업자에 대해서도 신기술금융사 겸영허용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
- ③ 벤처펀드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마켓 조성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선순환 조성

1. 추진 배경

금융위원회(위원장 임종룡)는 그간의 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,

○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(15.7.16)하였음

※ 그간의 추진 경과

- ①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(15.3.19) 및 제4차 금융개혁회의(15.4.17)에서 VC업계의 현장 애로 사항을 수렴
- ② 제2차 금융개혁추진단(15.6.11)에서 기재부·공정위·중기청 등 관계 부처에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
- ③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(15.7.9)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 추진 방안 확정
- ④ 제7차 금융개혁회의(15.7.16)에 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

2. 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의 기본 방향

<기본방향>

◆ 시장 자생적으로 「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」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

목표

중소·벤처기업 투자금융 선순환 생태계 구축

추진 전략

① 조성

민간중심
벤처생태계 전환 유도

② 운용

역량있는
벤처캐피탈 산업 육성

③ 회수

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
선순환 체계 구축

추진 과제

1. 민간자금 참여 제약요인 해소

- ① KVF설립시 모태조합의 무출자 규제 완화
- ② 증권사 벤처투자 건전성 규제 합리화
- ③ 크라우드펀딩 개방형 플랫폼 구축과 창업지원 강화

2. 민간자금 참여 유인 제고

- ① 성장사다리펀드 민간LP 인센티브 강화
- ② 은행 기술금융실적평가 투자분야 평점상향

1. 경쟁적인 VC산업 구조 형성

- ①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
- ② 자산운용사 인가시 VC업력 인정
- ③ PEF에 VC와 유사한 세제혜택 부여

2. 신기술조합 역량강화

- ① 투자범위 확대
- ② 공동GP 허용
- ③ 금투업자의 신기술사 겸영 허용
- ④ 자본금요건 완화

3. 성장사다리펀드 역량 강화

- ① 지배·운영구조 개선
- ② 운용인력 및 경영지원기능 평가강화
- ③ 기술가치펀드 활성화

1. M&A 활성화

- ① M&A전용펀드 확충
- ② 중기특화 IB 육성
- ③ PEF SPC에 SI참여허용
- ④ PEF 결합신고 면제확대

2. 중간회수시장 활성화

- ① 펀드지분 거래규제개선
- ② LP지분 거래시장 조성

3. IPO 활성화

- 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
- ② 코넥스 펀드 확충

3. 주요 과제

(1) [조성]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

① 민간출자자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

◎ (현장건의) “민간출자자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싶어도,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.
모태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, 다양한 통제장치들이 함께 부과되어 민간출자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.”

- (현행)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(KVF)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
 -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 설립을 선호하지만 모태조합 출자의무 규제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설립이 불가능
 - * 민간자금은 재정(모태펀드)과 공동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와 관리·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결성을 선호
- (개선) M&A,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(벤처법 개정)

⇒ (기대효과) 순수 민간자금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으로 다양한 투자 구조·전략을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대폭 증가

②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

◎ (현장건의) “벤처투자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입니다. 정책자금이 가져가는 수익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해 준다면, 민간투자자 유치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”

- (현행) 성장사다리펀드는 중·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손실 발생시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흡수(Downside protection)
 - * 민간투자자가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투자구조는 미활성화

- (개선) 일부 손실흡수 이외에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초과 수익 향유 인센티브도 제공

- ① (초과수익 이전)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(예 : 조달금리 +a) 초과 부분의 일부(예: 30%)를 민간 출자자(LP)에게 이전
- ② (지분매입 옵션) 펀드 투자 종료 후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낮은 가격(예 : 조달금리 +a)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

⇒ (기대효과) 사다리펀드와 민간 투자자 매칭비율(현재 1:2 수준) 증대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 확대 가능

[2] [운용] 경쟁촉진을 통한 역량있는 벤처캐피탈산업 육성

1]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

○ (현장건의) “PEF의 경우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벤처조합이나 신기술조합에 부여되는 세제지원이 없어 투자에 불리합니다.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이 동일하다면 세제 지원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”

- (현행) 조특법에 열거된 특정 투자기구가 아닌 펀드·PEF 등을 통해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*이 없음

* 배당소득 비과세, 수익 분배금 과세이연, 양도소득세 감면 등

- (개선) 창업·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 대해 벤처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

* 자본시장법에 창업·벤처기업 지원 전문 PEF에 대한 근거를 마련

⇒ (기대효과) PEF를 운용하는 GP들도 중소·벤처기업 투자목적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벤처투자기구간 경쟁 촉진

② 금융투자업자(증권·자산운용사)에 대해 신기술금융사 경영 허용

◎ (현장건의) “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기술금융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, 여전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.”

○ 여전법 시행령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경영 허용 근거 마련

⇒ (기대효과) 증권사·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운용사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로 시장 경쟁 촉진

③ [회수]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

◎ (현장건의) ① 금융회사 직원 : “벤처펀드 출자시에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자금이 7년 이상 묶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다는 점입니다”
② 벤처펀드 투자기관 직원 : “벤처투자조합이나 창투조합 지분을 매각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.”
③ VC 임원 : “세컨더리펀드를 운용할 때 벤처펀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DB가 부족하고, 전문 중개인이 없어 친분 있는 벤처펀드 운용사에 연락하여 알음알음으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”

①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

○ (현행) 벤처펀드 LP지분 등 펀드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

※ 모태펀드·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'14년까지 총 6,605억원 규모로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되었으나,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영

○ (개선)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LP지분 거래 시장 조성

① (펀드 조성) '16년까지 최소 3,000억원 규모로 중개기관을 활용한 출자지분 중개·매매를 수행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

-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민간매칭 방식으로 2년간 각각 1,500억원 펀드를 조성(성장사다리 700억원, 민간 800억원)

② **(중개기관)** 거래대상을 발굴(딜소싱)하고 지분의 가치평가, 매도·매수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**세컨더리 전문 브로커*** 육성

* 중소형 증권회사(중기 특화 IB)등이 참여 가능

- 중개 기관에 대한 **중개료, 성과 보수** 등을 세컨더리펀드에서 직접 지급하여 **역량 있는 중개인의 적극적 중개**를 유도
- 펀드 결성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**중개 기관을 복수로 선정**하여 **건전한 경쟁 관계**를 형성

③ **(인프라)** 벤처 조합 관련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**조합지분 정보 집중과 거래 전문장터**를 **금투협 KOTC-BB**에 개설

- 금융기관 등 **전문투자자와 VC관련 참여자들이** 보유한 투자기구(창투조합, 벤처조합, 신기술조합, PEF 등)의 **출자 지분 거래**를 허용

⇒ **(기대효과)** 세컨더리마켓을 조성하여 **회수시장 다변화**를 통해 **투자 - 회수 - 재투자**로 이어지는 **벤처투자 선순환 구조** 형성 촉진

* '14년 VC의 회수유형별 비중(%) : IPO (18.0), M&A (2.1), 프로젝트 종료 (21.0), 상환·장외매각(56.0)

② **출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약하는 법령·투자규약 개선**

○ **(현황)** 벤처펀드(창투조합·벤처조합)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**존속 기간 내 조합원의 지분매각을 제한**

- * ① 창투조합 : 민법(전원동의, 임의탈퇴 불가)에 따라 탈퇴가 상당히 제한적
- ② 벤처조합·PEF 등 : 규약 등에서 지분매각시 LP전원동의 등 규정 중

○ **(개선)** LP지분 거래를 제약하는 법령(창진법)·규약 등 개정으로 **출자 지분의 유동성을 높여 벤처펀드 참여를 촉진**

※ 여타 과제는 <별첨> 자료 참고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